경기교육대전환
크게제대로!

2027. 3. 1.자

공립 중등교원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계획

2026. 9.

경 기 도 교 육 청

(교원인사정책과)

탑재사이트	
G-인사이트 시도교류 매뉴얼	시·도별 「시·도간 교류 추진 계획」
NEIS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 -자료광장-사용자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홈페이지 > 중등교육과 > 부서업무방

2027. 3. 1.자 공립 중등교원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계획 (요약)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주요내용</th></tr>
<tr><td colspan="2">목적</td><td colspan="2">-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한 교직의 안정 도모
- 지역 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능률적인 직무수행 기반 조성</td></tr>
<tr><td colspan="2">방법</td><td colspan="2">시·도간 교류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 교류 원칙</td></tr>
<tr><td colspan="2">대상</td><td colspan="2">타시·도 교육청으로 교류(전출, 교환(파견))를 희망하는 공립 중등교원(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포함, 단, 특수는 국립학교 교원 포함)</td></tr>
<tr><td rowspan="5">내용</td><td>유형</td><td>타시·도 전출</td><td>타시·도 교환(파견)</td></tr>
<tr><td>대상</td><td>경기도 근속경력 3년 이상인 공립중등교원으로 타시·도 전출 희망자</td><td>경기도 공립중등교원으로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희망자</td></tr>
<tr><td>원칙</td><td>1:1 동수 교류</td><td>1:1 동수 교류,
파견기간 2년(연장불가)</td></tr>
<tr><td>순위 기준</td><td>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
2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유족(가족) 중 부부 별거자
3 부부별거자 4 직계존속별거자
5 일반희망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음)
※ 순위경합 시 동 순위 내 우선 기준
① 3자녀 이상 부양자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
② 별거 기간이 오래된 자
③ 별거 부부 교육공무원 ④ 별거 부부공무원 ⑤ 본도 장기 실근무자 ⑥ 교육총경력이 많은자
⑦ 근무성적이 상위인자 ⑧ 생년월일이 빠른 자</td><td>1 특별연구 과제 부여 자
2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3 원거리 근무로 인하여 별거하는 자
4 기타 희망자</td></tr>
<tr><td>제출 서류</td><td colspan="2">① G-인사이트 사이트에서 시도교류 신청서 작성
② 개인별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대상자 증명서, 배우자의 재직(경력) 증명서 등)
※ 모든 증빙서류의 발급일자는 공문시행일 이후이어야 함,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경 내역 모두 표시해야 함</td></tr>
<tr><td colspan="2" rowspan="2">제출 마감</td><td>2026. 10. 20.(화)</td><td>학교 ➡ 교육지원청</td></tr>
<tr><td>2026. 10. 23.(금)</td><td>교육지원청 ➡ 도교육청</td></tr>
<tr><td colspan="2">행정사항</td><td colspan="2">○ 소속 전교원(2027. 3. 1.자 복직예정자, 휴직자, 파견자 포함)에게 반드시 안내
○ 타시·도 내신은 1개 시도만 가능하며 중복 시 모두 취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과 광주로 구분하여 신청
○ 2020.3.1.자부터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기간은 2년이며 연장 불가
○ 인사교류 지원자는 2026. 11. 9.(금) 이후 내신 포기 불가
○ 타시·도 전입 관련 내용은 희망 시도의 계획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td></tr>
</table>

2027. 3. 1.자 공립 중등교원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계획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Ⅰ. 목적

○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한 교직의 안정 도모

○ 지역 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능률적인 직무수행 기반 조성

Ⅱ.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4호] 제7조의3, 제13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4호] 제3조

○ 장애인복지법[시행 2025. 7. 3. 법률 제19901호] 제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4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제42조

○ 2027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 2027학년도 시 · 도간 교원 인사교류 담당자 회의(2025. 9.)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④ 타시도 전출 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속기간 3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 기간 타시·도 전출 불가 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⑤ 근속기간 산정 시 계약제 교원 경력, 휴직기간**(단,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별거기간, 실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 · 도 교환 근무 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산출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경기도 내 공립학교(교육지원청 근무교사 포함) 실근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자는 타시 · 도 전출 서류제출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Ⅲ. 중등교원 시·도간 전보

1. 기본방향

가. 본도와 타시 · 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는 시 · 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 통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나. 통합교류 교과는 사회(일반사회, 지리, 통합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 기술 · 가정(기술, 가정, 기술 · 가정)이다.

다. 타시 · 도 전출과 일방전출 및 교환(파견)근무의 동시 내신 불가(2017년 행정예고)

2. 대상 : 공립(국립특수학교 포함) 중등교원

3. 타시·도 전출 원칙

가. 타시·도 전출 순위별 대상 및 요건

(근거: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7조(교원의 시 · 도간 교류))

순 위	전출 대상	전출 요건	구비서류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1~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1~3급 국가유공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존속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비속은 미혼자녀에 한함)	○ 장애인 부양 증빙자료 - 장애인 증명 - 상이1~3급 국가유공자 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1~3급 국가유공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2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부부별거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배우자가 전출희망 사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 독립유공자(유족)증명서 - 배우자주민등록초본 또는 배우자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 배우자주민등록초본 또는 배우자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3	○ 부부별거자	○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	○ 부부별거 증빙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재직(경력)증명서 또는 배우자주민등록초본 - 학교장의견서
4	○ 직계존속 별거자	○ 실질적 부양 책임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전출 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별거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장의견서 - 기타 증빙자료
5	○ 일반희망자	○ 1~4순위를 제외한 일반으로 희망하는 경우	
비고	○ 위 전출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중 인사교류 희망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재직(경력)증명서 - 기관이전(예정) 확인 증명서

※ 이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 이전현황(국토부 최근 기준)에 명시된 현재 이전한 공공기관과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임.

※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공공기관 이전 시·도로 타시도 전출 희망시에만 최우선 순위로 인정

나. 전출 순위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3자녀 이상 부양자(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
2) 별거 기간이 오래된 자
3) 별거 부부 교육공무원
4) 별거 부부공무원
5) 본도 장기 실근무자
6)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7)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동일한 경우 최근부터 역으로 적용)
8) 생년월일이 빠른 자

※ '2)별거 기간', '5)본도 실근무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

4. 타시·도 전출 제한

가.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신규 임용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나. 타시 · 도 전입자로서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다. 사립학교 공립 특채 후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라. 타시 · 도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 후 경기도에서 임용된 자로서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마.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타시 · 도 전출 부적격자**(수사개시 통보, 형사 소송 계류, 직위해제 등)**

사. 지병이 있거나 신체허약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아. 2027. 2. 28. 현재 휴직 중인 자(단, 전출예정일자로 복직을 신청한 자는 예외)

자. 특정 지역으로의 조건부 전출 요청자

차. 임용 직렬이 다른 교과(교사)의 전출은 불가(전공, 부전공 자격 불문)

카. 2027년 명예퇴직 신청(예정)자, 2024. 3. 1.자부터 적임자 배치 교사(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및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 2027. 3. 1.자 적임자 배치 교사(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신청(예정)자, 초빙교사 신청(예정)자 및 공모교장 응시(예정)자, 대학원 파견 및 해외연수 파견 등 임용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 규정 적용 대상자,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자

※ 경기도 근속기간(2027. 2. 28.자 기준)
-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
- 계약제교원 경력, 휴직기간, 군경력, 타시·도 교환근무 경력은 제외
(단,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

5. 타시·도 전입 제한

가.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타시 · 도 전출 부적격자(**수사개시 통보**, 형사소송 계류, **직위해제** 등)

다. 지병이 있거나 신체 허약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라. 2027. 2. 28. 현재 휴직 중인 자(단, 전입예정일자로 복직을 신청한 자는 예외)

마. 특정 지역(시·군)으로의 조건부 전입 요청자

바. 임용 직렬이 다른 교과(교사)의 전입은 불가(전공, 부전공 자격 불문)

사.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사면자는 제외)

※ 타시 · 도 전출 · 입은 임용발령교과(NEIS의 담당과목) 기준으로 처리함. 단, 부전공자격으로 발령교과 변경하여 발령되고 실제 발령변경교과를 교수하고 있으며 인사기록카드(NEIS 인사기록 포함)에 임용발령교과가 표시된 경우는 인정함.

6. 기타사항

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의해서 경기도 근무 교사가 전보의 우선권을 가지며 **타시 · 도 전입교사는 경기도 내 어느 시 · 군에도 배치될 수 있다.**

나.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타시 · 도 전출 전보내신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임용교과의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참고

7. 행정사항

가. 소속 전교원(2027. 3. 1.자 복직예정자, 휴직자, 파견자 포함)에게 반드시 통합메신저와 휴대폰메시지(휴직자, 파견자)를 통해 개별 안내 바람
(특히,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경기도 내 공립학교 근속 경력이 있을 시 타시 · 도 전출 내신서 제출 자격이 됨을 반드시 안내 바람)

나. 타시 · 도 내신은 1개 시 · 도만 가능 (중복 시 모두 취소됨)

다. 인사서류 제출 후 번복은 **불가**하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전출 지원자는 2026. 11. 9.(금) 이후 포기 불가함. ★)

라. 타시 · 도 전출이 확정된 교원들의 나이스 사용은 **2027. 2. 28. 16:00까지만 가능**

마. 2027학년도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에 공모하여 최종 합격한 타시 · 도 교원은 해당 시·도교육감 승인 하에 경기도로 일방전입 할 수 있음

바. 타시 · 도 전입 시 희망 임지에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타시 · 도 전입제한 조건 및 배치 계획은 해당 시도의 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바람
(개인별 확인이 원칙)

아. 제출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 되지 않도록 유의

Ⅳ. 중등교원 시·도간 교환(파견) 근무

1. 기본 방향

가.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 및 시기는 교환(파견) 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종, 직급, 과목별 교류 조건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1:1 동수로 교환(파견) 근무한다.

나. 교환(파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은 불가하다.

2.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순위별 대상 및 선정 기준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선정 순위 및 기준은 아래에 의하며, 경합될 경우 전출 순위에 의한다.

순위	교환(파견) 근무 사유	선정 기준	비 고
1	특별연구 과제 부여자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도 단위 2등급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복귀 후 연구보고서 제출
2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노부모가 70세 이상이고, 노부모 주민등록이 교환(파견) 희망 시·도에 등재된 자	
3	원거리 근무지로 인하여 별거하는 자	배우자가 교환(파견) 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4	기타 희망자		

※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3. 교환(파견) 전출 배제조건

가. **경기도내 전보 내신자(동일교만기, 지역(구역)만기, 일반 전보내신 포함)**

나.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다.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타시·도 전출 부적격자(**수사개시 통보**, 형사소송 계류, **직위해제** 등)

라. 지병이 있거나 신체허약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마. 2027. 2. 28. 현재 휴직 중인 자(단, 교환(파견)예정일자로 복직을 신청한 자 예외)
바. 임용 직렬이 다른 교과(교사)의 교환(파견) 전입은 불가(전공, 부전공 자격 불문)

4. 교환(파견) 전입 배제조건

가.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타시·도 전출 부적격자(**수사개시 통보**, 형사소송 계류, **직위해제** 등)
다. 지병이 있거나 신체허약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라. 2027. 2. 28. 현재 휴직 중인 자(단, 교환(파견)예정일자로 복직을 신청한 자 예외)
마. 임용 직렬이 다른 교과(교사)의 교환(파견) 전입은 불가(전공, 부전공 자격 불문)

5. 기타 사항

가. **특별연구 과제 수행자는 연구보고서 2부를 복귀 후 제출한다.**
나. 교환(파견)근무 시 취득한 벽지 가산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복귀 후 임지 지정은 **교환(파견) 근무 전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시 근무지와 동일한 시·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한다.
라. 시·도간 교환(파견)은 임용발령교과 기준으로 처리한다.
마. **타시·도 교환(파견)근무자는 파견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없으며**, 교환(파견) 근무의 상대방이 휴직 요청 시 교환(파견)이 취소되며 원소속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소속 전교원(2027. 3. 1.자 복직예정자, 휴직자 및 파견자 포함)에게 반드시 개별 안내**
나. 제출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허위기재 되지 않도록 유의
다. 인사서류 제출 후 번복은 **불가**하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교환(파견) 지원자는 2026. 11. 9.(금) 이후 포기 불가함. ★)
라. 타시·도 교환(파견)은 1개 시·도만 가능(중복 시 모두 취소됨)
마. 시·도간 일방전출 희망교사는 타시·도 교환(파견) 지원 불가
바. **타시·도 교환(파견)제한 조건 및 교환 계획은 해당 시도의 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 (개인별 확인이 원칙이며, 일부 시도의 경우 교환 희망지역(시·군)으로 실시함)**

Ⅴ. 추진일정

기 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2026.10.12.(월) ~ 10.13.(화)	○ G-인사이트 시·도교류 개요설정 및 일정등록	교육지원청 / 학교 업무 담당자
2026.10.14.(수) ~10.20.(화)	○ G-인사이트 시·도간 교류 희망자 신청 접수	학교 ⇒ 교육지원청
2026.10.21.(수) ~10.23.(금)	○ 교육지원청 접수서류 검토, 수정 후 도교육청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2026.10.23.(금) ~11.4.(수)	○ 접수서류 검토 및 수정 요청	도교육청
2026.11.9.(월) ~11.13.(금)	○ 타 시·도 교류 희망자 인원 현황 공개 ※ 경기도교육청 교직원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도교육청
2026.11.16.(월) ~11.18.(수)	○ 타 시·도 교류 희망자 개인별 순위 확인 (잠정 순위이며 변경될 수 있음) 확인: G-인사이트 시도교류 메뉴에서 확인	시·도 교육청별 순위공개일 다름
2026.12.14.(월) ~12.24.(목)	○ 타 시·도 교류 전출 희망자에 대한 동의 요구 및 회신	해당 시·도 교육청간
2026.12.29.(화)	○ 타 시·도 교류 전·출입자 확정 및 통지 ※ 교육지원청 확정 알림 공문 통지	해당 시·도 교육청
2027.2.	○ 인사교류 대상자 인사발령 알림	도교육청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시·도간 인사교류 내신서 작성 요령

Ⅰ 타시·도 전보내신서 작성

1 타시·도 전보내신서 작성

1. 교원 시·도간 교류는 2009. 3. 1.부터 매년 1회 3. 1.자만 실시
2. 타시·도 전출내신은 각종 민원 발생 방지 및 신청 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히 신청하도록 사전 연수 실시
3. 타시·도 전출 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1~3급 국가유공자의 부양자 → 국가(독립)유공대상자로서 부부별거자 → 부부별거자 → 직계존속 별거자 → 일반희망자**(전출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중 인사교류 희망자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4. 본도 근속경력 및 타시·도 근속경력은 인사기록카드를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한다. 단, 계약제교원 경력, 휴직기간(**단,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별거 기간, 실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도 교환근무 경력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본도 근무경력과 교육경력은 다를 수 있음**)

5. 타시·도 전출 제한

가.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신규 임용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나. 타시·도 전입자로서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다. 사립학교 공립 특채 후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라. 타시·도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 후 경기도에서 임용된 자로서 경기도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인 자 **(단,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
마. 현 직위에서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상위자격(교장,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요구 예정자, 징계처분 집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타시·도 전출 부적격자**(수사개시 통보, 형사소송 계류, 직위해제 등)**
사. 지병이 있거나 신체허약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아. 2027. 2. 28. 현재 휴직 중인 자(단, 전출예정일자로 복직을 신청한 자는 예외)
자. 특정 지역으로의 조건부 전출 요청자
차. 임용 직렬이 다른 교과(교사)의 전출은 불가(전공, 부전공 자격 불문)
카. 2027년 명예퇴직 신청(예정)자, 2024. 3. 1.자부터 적임자 배치 교사(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및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 2027. 3. 1.자 적임자 배치 교사(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초빙교사 신청(예정)자 및 공모교장 응시(예정)자, 대학원 파견 및 해외연수 파견 등 임용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 규정 적용 대상자,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자

6. 제출서류

구 분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제출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자 또는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자, 상이1~3급 국가유공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	필수제출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자, 상이1~3급 국가유공 대상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1	
	3	장애인 증명서, 상이1~3급 국가유공자 증명서	1	
국가(독립)유공대상자로서 부부별거자	4	국가(독립)유공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증명서 신청인이 내신자 본인이어야 함	1	필수제출
	5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에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어야 함	1	
	6	가족관계 증명서	1	
부부별거자	7	혼인관계 증명서	1	필수제출
	8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력증명서(기관장 발행-직인포함)	1	
직계존속 별거자	9	○ 본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해당자 필수제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휴직중인 자	10	공문사본 및 복직원 제출 ※ 복직 신청 내부 결재후 **공문사본**과 **복직원** 제출 ※ 필히 교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각1부	해당자 필수제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11	혼인관계 증명서	1	해당자 필수제출
	12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13	기관이전(예정) 확인 증명서**(양식1-기관장 직인 포함)**	1	
3자녀 이상 부양자	14	가족관계증명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된 경우)	1	해당자 필수제출

2 타시·도 전보내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1~3급 국가유공자의 부양자, 국가(독립) 유공대상자로서 부부별거자, 부부별거자, 직계존속별거자의 근무 및 거주지가 내신 희망 시·도와 같아야 함
2. 서울지역으로 타시·도 교류 희망자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1~3급 국가유공자의 부양자, 일반희망자인 경우만 해당됨(서울은 경기도와 인접지역이므로 별거 불인정)
3.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참조(대상 및 범위)
4. 별거 기간 산정 방법

구 분	별거 기간 산정 예시
부부별거자	예시) 광주 전출 희망자의 배우자가 거주 또는 재직이 광주1→전남→광주2 순으로 나타날 때, 별거 시작 시점은 '광주2' 부터 산정함
직계존속별거자	예시) 부산 전출 희망자의 직계존속자 거주지가 부산1→경남→부산2 순으로 나타날 때, 별거 시작 시점은 '부산2' 부터 산정함

5.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6.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초·중등 자격구분이 없으므로 교류 희망한 시·도교육청에 전출·전입 시 초·중등·특수학교 구분 없이 배치될 수 있음(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2102(2007. 11. 29.)

Ⅱ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원 및 복귀 희망원 작성

1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원 작성

1. 경기도내 전보 내신자는 시·도간 교환(파견)근무를 희망할 수 없으며 임용교과로만 신청하고, 기간은 2년이며 연장불가(근무지 변경이 될 경우 파견대상자 임지를 지정할 수 없음)

※ 기 행정예고 사항: 2020. 3. 1.자 타시도 교환(파견)부터 근무 기간은 2년 1회로 하며 연장 불가함.

2. 중등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환(파견)근무 희망원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
3. 타·시도 교환(파견) 대상자 순위 : 특별연구 과제 부여자→노부모 봉양자→부부별거→일반희망자
4. 본도 근속경력 및 타시·도 근속경력은 인사기록카드를 확인 후 정확히 작성. 단, 계약제 교원 경력, 휴직기간(**단,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별거 기간, 실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도 교환근무 경력은 제외(본도근무경력과 교육경력은 다를 수 있음)
5. 시·도간 교환(파견)근무 희망원에 본인 날인, 증빙서류 확인 철저
6.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
7. 타시·도 교환(파견)근무는 **파견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없으며, 교환(파견)근무의 상대방이 휴직 요청 시 교환(파견)이 취소되며 원소속교로 복귀**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구 분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제출대상
특별연구 과제 부여자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도 단위 2등급이상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			
	1	연구계획서	1	필수제출
	2	학위증명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	1	
노부모 봉양자	노부모가 70세 이상이고, 노부모 주민등록이 교환(파견)희망 시·도에 등재된 자			
	3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1	필수제출
	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부 별거자	배우자가 교환(파견)희망 시·도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5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1	필수제출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필요시 배우자의 경력증명서(기관장 발행)	1	

2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복귀 희망원 작성

1. 타시 · 도 교환(파견)근무 만기 교사는 반드시 복귀 희망원을 원소속교에 제출한다.
2. 제출서류 : 타시 · 도 교환(파견)근무 복귀 희망원(양식 2) 1부
3. 제출방법: K-에듀파인 공문으로 경기도교육청(교원인사정책과)으로 제출

타시·도 전보내신서 작성 방법

연번	구 분	작 성 요 령
1	본인전화	내신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예 : 010-1234-5678)
2	전출희망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시·도를 기재
3	희망근무지역	타시·도 전출시 전출 희망 시도의 희망 근무 지역을 기재(예 : 강남구, 음성군, 원주시) ※ 3희망지까지 모두 기재. 단, 제주시는 2희망지까지, 세종시는 1희망지까지 기재
4	경기도 공립 경력	경기도 근무년수(2027. 2. 28.기준)의 합계란은 실제로 경기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년수를 기입 (계약제교원 경력, 휴직경력, 군경력, 타시·도 근무경력, 타시·도 교환근무 경력 등은 모두 제외) ※ 15일 이상은 절상(예 : 4년 2월 15일 → 4년 3월, 4년 2월 14일 → 4년 2월)
5	타시도 경력	시·도간 인사교류로 경기도에 전입한 교원의 타시도 정교사 경력 기재 ※ 인사기록카드의 '경력' 확인
6	임용전 경력	경기도 사립 정교사 경력 및 경기도 신규임용전 타시도 정교사 경력 기재 ※ 인사기록카드의 '임용전 경력' 확인
7	휴직·파견	육아휴직, 병역휴직, 파견(4호) 기재 ※ 내신서 작성일 현재 휴직중인 자는 서류제출시 복직원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공문사본**과 **복직원**을 교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8	교육총경력	교육총경력(2027. 2. 28.기준)은 4. 경기도 공립 경력, 5. 타시도 경력, 6. 임용전 경력의 합을 기재 (**육아휴직자의 첫째, 둘째, 셋째 아이는 3년 이내**의 휴직 인정, 임용 후 군경력은 포함하여 작성하되 계약제 교원경력,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은 제외)
9	부부별거기간	전출사유가 부부별거인 경우 경기도 임용 발령일로부터 기준일(2027. 2. 28.)까지 실제로 별거한 기간을 계산하여 기입(모든 휴직기간 및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은 제외) ※ 최초임용발령일, 혼인관계증명서상혼인일, 최초별거시작일 중에서 가장 최근 일자를 기준으로 2027. 2. 28.까지의 별거일을 계산하여 기입
10	직계존속별거 기간	전출사유가 직계존속별거인 경우 경기도 임용 발령일로부터 기준일(2027. 2. 28.)까지 실제로 별거한 기간을 계산하여 기입(모든 휴직기간 및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은 제외) ※ 최초임용발령일, 최초별거시작일 중에서 가장 최근 일자를 기준으로 2027. 2. 28.까지의 별거일을 계산하여 기입
11	전출사유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상위 하나만 기입** (예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또는 상이1~3급 국가유공자 부양, ②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③ 부부별거자, ④ 직계존속별거자, ⑤ 일반희망자)
12	3자녀 이상 부양자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13	부부별거	부부별거자의 경우 부부공무원 여부, 배우자 성명, 근무처 입력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희망원 작성 방법

연번	구 분	작 성 요 령
1	본인전화	내신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입(예 : 010-1234-5678)
2	교환희망시·도	교환을 희망하는 시·도를 기재
3	교환(파견)희망 시·군·구	타시·도 교환(파견)시 교환(파견) 희망 시도의 희망 근무 지역을 기재 (예 : 강남구, 음성군, 원주시)
4	교환기간	**2년(단, 연장 불가함)**
5	경기도 공립 경력	경기도 근무년수(2027. 2. 28.기준)의 합계란은 실제로 경기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년수를 기입 (계약제교원 경력, 휴직경력, 군경력, 타시·도 근무경력, 타시·도 교환근무 경력 등은 모두 제외) ※ 15일 이상은 절상(예 : 4년 2월 15일 → 4년 3월, 4년 2월 14일 → 4년 2월)
6	타시도 경력	시·도간 인사교류로 경기도에 전입한 교원의 타시도 정교사 경력 기재 ※ 인사기록카드의 '경력' 확인
7	임용전 경력	경기도 사립 정교사 경력 및 경기도 신규임용전 타시도 정교사 경력 기재 ※ 인사기록카드의 '임용전 경력' 확인
8	휴직·파견	육아휴직, 병역휴직, 파견(4호) 기재 ※ 내신서 작성일 현재 휴직중인 자는 서류제출시 복직원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공문사본**과 **복직원**을 교감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9	교육총경력	교육총경력(2027. 2. 28.기준)은 5. 경기도 공립 경력, 6. 타시도 경력, 7. 임용전 경력의 합을 기재 (**육아휴직자의 첫째, 둘째, 셋째 아이는 3년 이내**의 휴직 인정, 임용 후 군경력(병역휴직)은 포함하여 작성하되 계약제 교원경력,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은 제외)
10	교환(파견) 요청사유	① 특별연구 과제 부여자 ② 노부모 봉양자 ③ 부부 별거자 ④ 일반희망자

※ 시·도간 교환(파견)근무 희망원을 제출한 자는 경기도내 전보 내신(관내 내신 포함)을 할 수 없으며, 임용교과 외의 자격으로 교환근무를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

※ 기타사항은 타시·도 전보내신서 작성 방법 참조

(양식 1)

기관 이전(예정) 확인 증명서

□ 기　관　명 :

□ 기 관 주 소

▷ 현　　주　　소 :

▷ 이전(예정) 주소 :

□ 기관 이전(예정)일 :　20　　년　　월　　일

위 기록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양식 2)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복귀 희망원

소 속 (원적학교)	시(군) 학교		현교환(파견) 근무시도		
성 명 (한 자)	( )		성 별	담당 과목	
			주민등록번호		
교환(파견) 근무기간	2025. 3. 1. ~ 2027. 2. 28.(2년간)				
현 교환(파견) 학교	학교명	(☎ - -)			
	주 소				
교환(파견)지 주소 및 전화		(☎ - -)			
비고					

상기 본인은 타시도 교환(파견)근무 기간이 종료되어 경기도교육청 복귀를 희망합니다.

2026년 월 일

○○학교 교사 (인)

위 기록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학교장 (직인)

경 기 도 교 육 감 귀 하